대한비과학회 보험위원회 규정

(2011. 1. 19. 초안)
(2011. 3. 13. 제정)
(2014. 3. 9.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비과학회 보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비과학회와 관련된 건강보험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비과학회 회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의료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연구 및 검토
2. 의료보험에 대한 회원 교육 및 홍보
3.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회 및 보험관련 유관단체와의 회의 및 협조
4. 기타 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제4조(구성) ① 본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험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보험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최소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보험이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주관은 보험이사가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정) 본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한다.

제7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